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080600030]

홈페이지 : www.handscoffee.com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 2008년 9월 25일]

이메일 : cbo@handscoffee.com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 2013년 6월 14일]

핸즈커피 정보공개서

핸즈커피 체인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13. . . .

[주식회사 지 핸드즈]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 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639-1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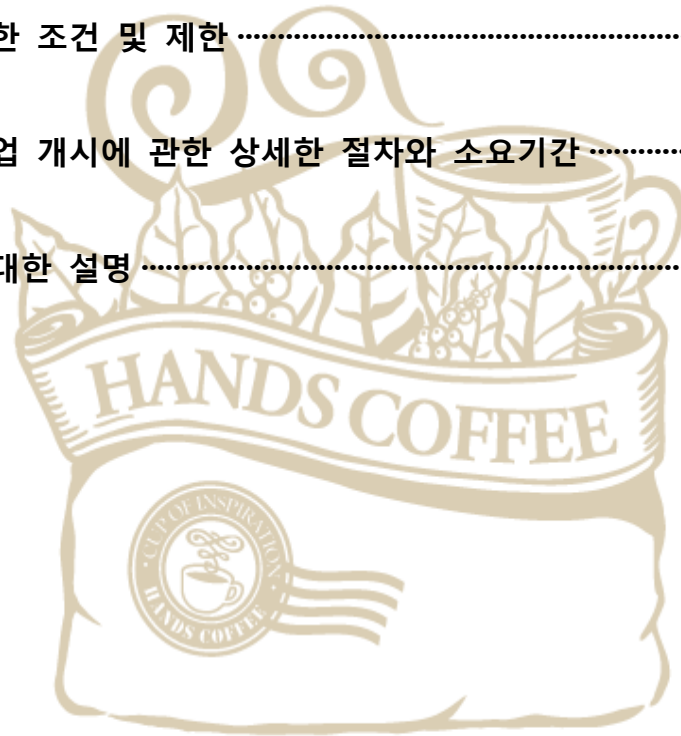
Tel) 053.313.3476

Fax) 053.313.3478

담당부서 : 기획홍보팀 시장조사 담당자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5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8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9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6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29
V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31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 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지핸즈	핸즈커피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639-1번지			
	설립일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7.3.30	2012.09.27	2012.09.01	진경도	053.313.3476	053.313.3478
	법인등록번호	170111-0473033		사업자등록번호	504-86-01276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③	직위
배우자	이 보 경	이사	2008.5.~현재	이사
동생	진 경 수	감사	2012.09.~현재	감사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핸즈커피]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핸즈커피	영어로 '손'을 의미하는 'Hands'
상 호	핸즈커피 OO점	
상표(서비스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 45-0022035 서비스표 등록번호 : 41-0171790
광 고	해당없음	
그 밖의 영업표지		2nd 심볼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10년	719,347	585,471	133,875	2,394,818	140,071	133,875
2011년	1,568,128	1,205,648	362,479	3,472,691	269,103	220,309
2012년(개인)				3,270,006		
2012년(법인)	2,457,936	1,923,034	534,901	1,861,649	109,566	73,301

그 근거자료는 [정보공개서 **별첨1**]과 같습니다. 당사는 [2012]년 [9]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 매출과 재무제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두 가지 사업자로 나뉘어 졌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결산이 나와 재무상황을 요약 표시 하였으나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는 5월 이후 표시됩니다. [※당사의 최근 3년 재무상황은 2010~2012년 재무제표 자료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영업표지	연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매출액	상한	하한
핸즈커피	2010년	2,486,797	288,663	10,199
	2011년	3,723,739	317,906	5,183
	2012년	5,502,515	314,162	7,931

[당사의 매출은 가맹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커피제조, 식자재 및 용품 도소매, 인테리어공사, 교육 등의 매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의 매출액은 [외부 수탁교육]과 [소매 판매]를 제외한 98%의 매출이 가맹사업매출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가맹사업관련 매출액의 상한 하한은 해당년도 전체 가맹점별 매출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진경도	대표이사	2002.1.~2004.6.	(주)반석홈 대표이사	경영
			2006.9.~2012.08	핸즈커피 대표	경영
			2012.09.~현재	(주)지핸즈 대표	경영
	이보경	이사	2008.5.~2012.08	핸즈커피 이사	배전
			2012.09~현재	(주)지핸즈 이사	가맹
가맹사업 비관련임원	진경수	감사	2012.09.~현재	(주)지핸즈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12년 12월 31일	2	0	23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핸드커피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핸즈커피 (상표권)	상표 사용권	2006.11.6 출원 2008.1.11 등록	출원 제2006-0004011 등록 제45-0022035	진경도	2018.01.11
핸즈커피 (상표권)	상표 사용권	2007.11.2 출원 2008. 8.1 등록	출원 제2007-0028813 등록 제41-0171790	진경도	2018.08.01
핸즈노란책 (저작권)	어문저작물 저작권	2009.6.22 등록	등록 제C-2009-004876	진경도	저작권법 제36조 규정에 따름
핸즈커피 메뉴얼북	어문저작물	2012.12.20 등록	제C-2012-027603호	주식회사 지핸즈	저작권법 제53조 규정에 따름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핸드커피 가맹사업 현황

1. 핸드커피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07년 8월 1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06년 10월 27일]

2. [핸드커피]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핸드커피	핸드커피	진경도	2007.8.1.~2012.8.31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639-1번지
(주)지핸즈	핸드커피	진경도	2012.9.1.~현재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639-1번지

3.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핸드커피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10.12.31.			2011.12.31.			2012.12.31.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42	41	1	52	50	2	65	63	2
서울	-	-	-	-	-	-	-	-	-
부산	4	4	-	7	6	1	12	11	1
대구	29	28	1	31	30	1	31	30	1
인천	-	-	-	-	-	-	-	-	-
광주	1	1	-	1	1	-	1	1	-
대전	-	-	-	-	-	-	-	-	-
울산	2	2	-	2	2	-	3	3	-
경기	1	1	-	1	1	-	1	1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5	5	-	9	9	-	15	15	-
경남	-	-	-	1	1	-	2	2	-
제주	-	-	-	-	-	-	-	-	-

4. 최근 3년간 [핸즈커피] 가맹점 수

(단위:개)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②	명의변경 ^③	연말
2010	30	11	0	0	4	41
2011	41	9	0	0	9	50
2012	50	15	0	2	9	63

핸즈커피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정보공개서 **별첨3**]을 확인하십시오.

5. 핸드커피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핸즈커피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6.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12 말 가맹점 수	2012 월평균 매출액(단위: 천원)			비고
		매출액	상한	하한	
전체	63	14,967	39,066	5,386	
서울	-				
부산	11	25,177	39,066	14,463	
대구	30	12,094	19,489	6,334	
광주	1				5곳 미만
대전	-				
울산	3				5곳 미만
경기	1				5곳 미만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15	14,973	35,022	5,386	
경남	2				5곳 미만
제주	-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다음의 서식을 따른 것입니다.

[매출액 = 가맹점에 공급하는 도소매 물품 공급액 ÷ 11%]

당사가 보유한 가맹점사업자 원가 분석 자료에 따르면 본사 도소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12%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11%로 역산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특히, 경북지역과 부산지역의 경우, 2012년 10월 이후 영업을 개시한 4개 가맹점 (연산점, 김천역점, 문경점, 연산역점)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 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 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표에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부산 지역 부분에서 전체 가맹점 수 11개가 아닌 실제 9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이고, 경북 지역 부분에서 전체 가맹점수 15개가 아닌 실제 13개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 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7.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핸즈커피]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지사나 지역총판이 없습니다.

8.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12년]에 [핸즈커피]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총 [16,240]천원이며,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한 내역은 없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25]쪽을 참고하십시오.

9.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신한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칠곡지점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 896	053-325-8369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신한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신한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지핸즈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신한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 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예치신청서는 [정보공개서 별첨5]에 있습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0.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내용은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핸드커피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시설비용, 기자재 비용, 초도 물품·비품, 간판비용, 냉난방 시설비용, 의, 탁자 가구 비용,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예산내역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별도)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총 계	[15,000~15,500]			
가맹가입비	3,000	계약체결일까지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할 경우 전액반환, 영업 개시 이후부터 최초 계약기간 3년 중에 해지시 잔여 가치만 반환	가맹점 모집을 위한 소요 비용. 상표권 사용료
경영기법전수 비용	7,000	계약체결일까지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상품사용 및 기술이용에 따른 소멸성 비용
교육비	2,000	계약체결일까지	교육시작 2일전에 계약해지시에만 반환됨	교육은 가맹의무조건이고 가맹해지시 당사 기준에 의해 교육비는 반환대상제외
오픈지원 인력비	3,000 ~ 3,500	계약체결일까지	영업개시 1주일전	오픈팀 구성이후(오픈1주일전)에는 불가

2) 핸드커피는 가맹계약시 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종료시 반환할 보증금이 없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15,500]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VAT별도)
합계	15,500
가맹가입비	3,000
교육비	2,000
경영기법전수비	7,000
오픈비	3,5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2]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구분 ^①	지급대상 ^②	금액 ^③	지급 기한	비고
총계		[136,953]		
필수설비(정착물)	(주)지핸즈	31,198	개점일 3일전	선금2000만원 포함금액
운영비품 및 인쇄물	(주)지핸즈외	5,875	개점일 3일전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주)지핸즈	67,680	착공시 40% 착공15일후 40% 오픈 3일전 20%
	냉난방	(주)지핸즈	6,500	
	간판	(주)지핸즈	7,500	
	가구	(주)지핸즈	8,100	
	벽화/액자/DP 용품	(주)지핸즈	3,200	
무인경비	경비업체	100	개통전	추정금액
오디오(중고)	오디오업체	1,500	개점일 3일전	추정금액
주방, 전자제품	직접구매	2,300	개점일 3일전	추정금액
초도물량, 소모품등	직접구매	3,000	개점일 3일전	추정금액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셀프형 80㎡내역을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 창업 상담 시 평형별 예산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특히 베이커리형 매장의 경우 추가기물이 많으므로 별도 예산서를 상호 협의하여 작성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가 직접 입지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맹상담(입지 기준정보 교환) -> 가맹희망자 상권조사 -> 가맹본부 상권 검토 -> 입지 결정 -> 가맹계약 ※가맹상담시 기존 가맹점과의 상권충돌, 배후단지 분포, 접근성, 유동인구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조사한 상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뿐 최종 결정은 가맹희망자의 몫입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1)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2) 면접을 통해 핸드커피 사업과 잘 어울리는지를 결정. 3) 휴게음식업에 적합한 보건증 발급 가능자 일 것	1)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아닐 것 2)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1) 가맹사업자의 추천 2) 휴게음식업에 적합한 보건증	1)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아닐 것 2)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핸즈커피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의 상세 내역은 [정보공개서 **별첨2**]에 제공됩니다.]

물품 내역 ^①		공급방법 ^②	공급업체 ^③
기계, 기구	Espresso머신	가맹계약에 포함	(주)지핸즈
	드립관련	가맹계약에 포함	(주)지핸즈
	잔류 외 기타	가맹계약에 포함	(주)지핸즈
외부	간판	가맹계약에 포함	(주)지핸즈
내장재	실내공사	가맹계약에 포함	(주)지핸즈
기타	pos(금전출납)	가맹계약에 포함	(주)지핸즈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납부 지체에 따른 이자 비용은 별도 부담 하셔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구분	총액	계약금	중도금(1)	중도금(2)	잔금
금액(천원)	15,500	총액의 10%	40%	40%	10%
납부일		계약일	계약일+15일	계약일+1월	계약일+2월
비고	개점일까지 납부가 되지 않았을 경우 연 15% 이자 부담				

9) 핸드커피는 별도 운영규정집 및 소책자(핸즈노란책)을 가맹사업자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27]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본부비	(주)지핸즈	월 할인 후 매출액의 2%	다음 월 10일	반환되지 않음	핸즈커피 상표사용에 대한 영업중 대가	

2)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재고관리, 회계처리 등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단, 본부의 필요에 의해 영업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의무 금액은 없습니다. 단 가맹금은 기본 계약기간 후엔 소멸됩니다. 하지만,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				
추가 교육비	협의하여 결정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추가교육 필 요시
점포 이전비	협의하여 분담	점포 이전 후 10일 이내	점포 이전에 합의 하지 않을 경우		점포이전 합 의시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기본가맹계약이 1회 연장된 경우는 가맹금이 소멸되므로 반환금은 없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최초 가맹일로부터 3년 동안의 기간 중 남은 기간을 산정하여 일부 가맹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핸드커피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주)지앤즈]에 추가적으로 부담하셔야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단, 양수인은 가맹본부에 가맹금중(가맹가입비, 경영기법전수비, 교육비)[12,000]천원을 납부하셔야 하며, 양수인은 최초 가맹희망자가 밟아야 하는 가맹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양수인은 (주)지앤즈의 내부 규정에 의해 가맹계약이 거부 될 수도 있습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4]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 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 본부가 요청하는 영업 관련 자산(레시피북, 핸드노란책등)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귀하는 핸드커피가 요구하는 금액 (철거비 포함)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정산해야 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 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 (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귀하가 핸드커피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품목	규격	거래 형태	거래 상대방	비고
부동산	해당없음				
용역	해당없음				
설비	에스프레소머신 외 10종	2그룹	강제	(주)지핸즈	설비물품리스트참조
	레귤러 그라인더외 26종	전동그라인더	강제	(주)지핸즈	설비물품리스트참조
상품	드립포트외 26종	핸드드립관련 기구	강제	(주)지핸즈	거래물품리스트참조
	도기잔 및 테이크아웃류 18종	도기잔 및 테이크아웃용 품류	강제	(주)지핸즈	거래물품리스트참조
원·부재료	커피 및 시럽·설탕류	1kg	강제	(주)지핸즈	거래물품리스트참조
기타 상세 내역은 별첨 "계약서별지3:공급원부재료내역"과 "정보공개서 별지2:설비물품리스트"에 상세히 제공.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 주선의 대가 내역

당사는 핸드커피매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주선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용역 ^②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③	산정기준 ^④	금액 ^⑤	비고 ^⑥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주식회사한국 하겐다즈	거래상대방	거래액의 5%	연간 5,647	2012년 기준

3.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핸드커피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 삼성화재와 MOU체결로 가맹사업자에게 필요한 재물 및 화재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단, 개인 및 사업상 신용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커피류	핸즈커피에서 공급하고, 핸드커피가 공문으로 제공하는 "소비자가격표"에 기재된 물품에 한함.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설탕류			
추출기구류			
기타 소품류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커피원두, 자체개발원재료 및 커피관련교육 메뉴 레시피	동종 및 유사업종 거래처에 커피 및 커피관련 교육, 메뉴레시피를 제공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단종커피	18,000(200g)	수시로 공문 개별통보	2013.4월 기준
단종커피(최고급)	25,000(200g)	"	"

기타 상품은 공급처 사정의 변화에 따라 공급이 안 될 수도 있으며 수시로 공문으로 상품 정보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핸드커피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은 가맹점 간의 경쟁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 본부에서 정하여 공지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되어 있음.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영업지역 보호 제도 유무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여부

당사 및 계열회사는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영업지역 제도 운영 여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여부
○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과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변경가능 여부	변경 사유
가구수 6천가구 당 1점포	별지지도에 영업지역을 보라색 실선으로표시	가능	상권 변화(쇼핑몰, 영화관등 단일 상권으로 충분한 영업이익이 가능하며, 기존 사업자의 상권과 중복되지 않는)로 인해 추가적인 사업장의 형성이 가능할 시 기존 사업자와 협의 가능

3) 영업지역을 재조정(변경)하는 경우의 절차

당사는 영업지역을 재조정하기에 앞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고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가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당사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영업지역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도로사정의 변경이나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확대가 일어난 경우와 기본 계약기간 (최초3년) 종료 후 상권재조사 후 가맹점사업자와 상호간 이해관계 분석 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핸즈커피'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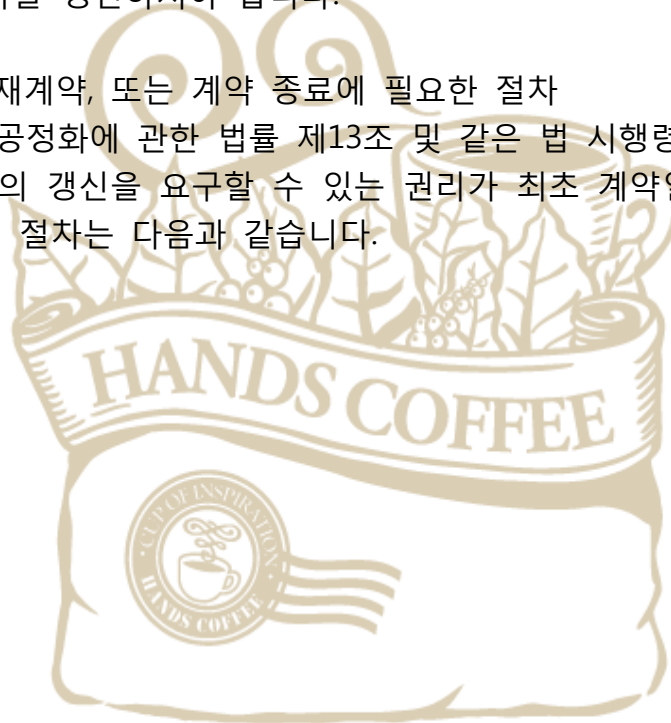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기간

핸즈커피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후 [3]년이며, 계약기간 만료전 180일부터 90일 전까지 계약해지 통지가 없는 경우 자동 1회 [2]년간 연장됩니다. 다음 계약 기간에는 계약을 갱신하셔야 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 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건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6조 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6조 1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36조 1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36조 1항
○ 핸드커피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36조 1항
○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거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6조 1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 운영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계약을 어겼을 경우 외	34조
○ 계약조건상 요구하는 교육, 훈련을 거부하거나 규정 이상 결석했을 때	제19조 각항
○ 본사의 영업방침을 규정 이상 어겼을 경우	제29조 1항
○ 영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 및 구입에 관한 규정을 어겼을 경우	제37조 3항
○ 가격 결정을 임의로 하였을 경우	제37조
○ 본사의 경영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지도, 개선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제20조
○ 계약서상 “을”의 의무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6조
○ 계약서상 금지사항을 어겼을 경우	제37조
○ 비밀 준수의 의무를 어겼을 경우	제37조 2항
○ 가맹계약자가 본사가 권유한 방제서비스 계약 및 충분한 보험가입 미비로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제 33조 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7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7조 2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7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37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37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37조 2항

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 (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37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7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37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7조 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사항 없음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 들어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 할 것 ○ 가맹계약서 제34조의 양도 조건에 맞을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팀 (053-313-3476)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도인은 최초계약기간중 미경과 잔여계약기간 비율에 해당하는 [가맹가입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수자는 가맹가입비, 경영기법전수비용,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재오픈 비용, 개점행사비 비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추가 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가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동업자 혹은 직계존비속의 경우에 한함	모든 권리의무	상동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 '업무 위탁' 부분 삭제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개설 시,도,광역시도 지역 내에서] 귀하가 핸드커피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휴게음식업 혹은 일반음식업으로 커피를 제공하는 업종 ○ 커피교육 서비스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가맹팀 (053-313-3476)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핸드커피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06:00~익일05:00 시간내 (12시간이상)	자율로 결정	문의: 가맹팀 (053-313-347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해당없음	직접 근무	전 메뉴가 가능한 점주 지정 매니저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메뉴(70점)	슈퍼바이저 매장 방문 → 메뉴 시음 및 매장 전체 운영 상태 확인 등 → 리포트 작성 → 리포트 가맹점 발송	연 2회 정기 감독 (필요시 수시 감독)	가맹팀 슈퍼바 이저	180점이하 경고 180-210점 주의 (300점 만점) 기본계약기간 중 3회 경고시 가맹해지사유 발생
위생 청결(70점)				
서비스(70점)				
시스템(40점)				
기계관리(50점)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확인 후 공문으로 전달하며 핸드커피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 [별첨4] 관리표(슈퍼바이징리포트) 첨부.]

5) 가맹점 자체 개별메뉴에 대한 허가

당사는 BCM(Branch Choice Menu)란 이름으로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개별적 메뉴 개발과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락하고 있습니다. 본사의 이미지와 기존 본사 자체 메뉴의 매출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5개 메뉴까지 본사 승인 후 개발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핸드커피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광고 전체 행사	가맹본부(5%), 해당 가맹 사업자가 (95)%씩 각각 분담 (단,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 후 최종 분담금 확정	
개별 행사	본사부담 50%, 가맹점 부담 50% (단, 협의에 의해 변경가능)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후 최종 분담금 확정	판촉 행사
프리쿠폰	인쇄물, 도장 본사 부담	가맹점 부담 100%	분담 없음	도장 10개당 1잔 프리제공
할인카드 (아너스 멤버십)	카드, 전산시스템, 홍보유인물은 본사 부담	할인금액 가맹점 부담 100%	분담 없음	상시 10% 할인(일부메뉴 제외)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와 광고·판촉 사실을 서면으로 협의하여 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 이행 보증금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0일 내외	[9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 계약 체결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5~45	
가맹금 예치	- 지정금융기관에 가맹금 예치	D-35~45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35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32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32~3(29일)	
인테리어목공사완 료/교육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인테리어 목공사 완 료	D-45~4(14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 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연락처: 02-3445-9898,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핸드커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바리스타교육, 매장 운영 메뉴얼 교육 등	창업자 마스터클래스	가맹계약 체결 후 오픈전 2주간	필수 교육
정기교육 점주 OJT	신메뉴 소개, 전체가맹점 회의, 전체가맹점주 경영자교육	OJT	연간 2회	필수 교육
TTS, MTS, STS	가맹점 근무자 교육	실무교육중심 코스별 3단계	연간 10회	필수 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핸드커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훈련과정	실시시기	이수시간	가맹점사업자 부담비용 (단위: 천원)
신규교육	오픈전 2주간	10일	2,000
TTS (Trainee Training School)	연 10회	오픈 후 3년 이내 전과정 이수	없음
MTS (Manager Training School)	연 10회	오픈 후 3년 이내 전과정 이수	없음
STS (Service Training School)	연 10회	오픈 후 3년 이내 전과정 이수	없음
정기교육(점주OJT)	연 2회	매회 4시간	없음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6조에 따라 매장을 오픈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거부할 경우 가맹계약서 제19조 및 제37조에 의해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 및 경고를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경영팀(053-313-3476)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과(02-2023-4010)** 또는 **가맹유통과(help@franchise.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handscoffee.com]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지앤즈 계좌번호

국민은행 817801-01-561828 (주)지앤즈 진경도

재무제표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증명원)

(1/1)

발급번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과·면세겸영사업자 포함)			처리기간
4733-476-9479-528					즉 시
성명(대표자)	진경도	주민(법인)등록번호	640519-1682611		
상호(법인명)	헨즈커피	사업자등록번호	504-18-51933		
업태	제조업	종 목	커피		
사업장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길 61-9 (국우동)				
(단위 : 원)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 (수입금액)			납부세액
부터	까지	계	과세분	면세분	
2012/01/01	2012/06/30	2,379,848,797	2,345,145,897	34,702,900	67,310,558
2012/07/01	2012/08/31	890,157,268	873,031,768	17,125,500	25,654,579
		이 하	이 백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13 년 04 월 16 일					
담당부서	민원봉사실				
담당자	정순원				
연락처	053)350-4224				
			북대구세무서장 		

 국세청

◆ 본 증명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민원증명 원본확인』 메뉴를 통해 문서발급번호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거나,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 확인해 주십시오. 다만 문서발급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가능합니다.

재무제표(법인)



발급번호		재무제표확인		처리기간	
858				즉시	
납세자	① 주소 또는 거소 (법인은본점소재지)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길 61-9 (국우동)			
	② 사업장 소재지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길 61-9 (국우동)	⑤ 전화번호	053 - 313 - 3476	
	④ 상호 (법인명)	(주)지앤즈	⑥ 사업자등록번호	504-86-01276	
	⑥ 성명 (대표자)	진경도	⑦ 주민(법인)등록번호	170111-0473033	
	⑧ 사업의 종류	업태: 도매, 제조, 서비스	종목	커피및관련잡화, 커피, 커피교육	
	⑩ 용도	대구은행계출용	⑩수량	1	
⑫ 확인받고자 하는 재무제표 (별도첨부)		과세연도 (사업연도)	재무제표명칭		
		2012년09월01일	재무상태표		
		2012년12월31일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공사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로서 전자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04월 16일					
(주)지앤즈 진경도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세무사 김규현 귀하					
첨부서류 : 확인받고자 하는 재무제표					
세무사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 309 8			
	관리번호	T-3478-4	전화번호	053-756-8558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로서 전자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04월 16일					
세무사 김규현 (인)					
* 본 재무제표확인은 세무서에 신고된 표준재무제표의 근거가 되는 재무제표임을 확인하는 것이며, 재무제표상의 계정과목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 x 297mm(선문용지54g/㎡)

재무상태표

제 1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지앤즈

(단위 : 원)

과 목	재 1(당)기 금 액	금 액
자 산		
I. 유 동 자 산		910,253,426
(1) 당 좌 자 산		709,443,276
현 금 및 현 금성 자산	65,764,988	
단 기 투 자 자 산	4,000,000	
매 출 채 권	549,598,615	
미 수 수 익	179,098	
선 금 금	50,247,000	
선 금 비 용	6,411,085	
가 지 금 금	33,000,000	
미 환 금 제 세	242,490	
(2) 채 고 자 산		200,810,150
상 품	124,948,540	
원 재 료	67,271,294	
재 공 품	8,590,316	
II. 비 유 동 자 산		1,547,682,600
(1) 투 자 자 산		4,351,300
보 험 예 치 금	4,351,300	
(2) 유 형 자 산		1,459,331,300
토 지	745,786,670	
건 물	419,053,71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3,492,114)	
기 계 장 치	156,894,0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23,586,398)	
차 량 운 반 구	71,319,14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0,721,643)	
비 품	33,507,769	
감 가 상 각 누 계 액	(5,037,334)	
건 설 중 인 자 산	13,500,000	
시 설 장 치	70,000,0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7,892,500)	
(3) 무 형 자 산		2,800,000
소 프 트 웨 어	2,800,000	
(4) 가 타 비 유 동 자 산		81,200,000
임 차 보 증 금	81,000,000	
기 타 보 증 금	200,000	
자 산 총 계		2,457,936,026
부 채		
I. 유 동 부 채		1,023,034,117
매 입 채 무	179,045,241	
미 지 금	10,377,746	

재무상태표

제 1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지앤즈

(단위 : 원)

과목	제 1(당)기 금액	
예수금	6,714,160	
부가세예수금	71,420,250	
선수금	70,431,000	
단기차입금	630,000,000	
미지급비용	55,045,720	
II. 비유동부채		900,000,000
장기차입금	900,000,000	
부채총계		1,923,034,117
자본		461,600,000
I. 자본금	461,600,000	
II. 자본잉여금		0
III. 자본조정		0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0
V. 이익잉여금		73,301,909
미처분이익잉여금	73,301,909	
(당 기 순 이 익)		
당기 : 73,301,909 원		
전기 : 0 원		
자본총계		534,901,909
부채 및 자본총계		2,457,936,026

손익계산서

제 1(당)기 2012년 9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지현즈

(단위 : 원)

과 목	제 1 (당)기 금 액	
I. 매출액		1,861,649,447
상 품 매 출	733,843,509	
제 품 매 출	351,139,832	
공 사 수 입 금	614,528,270	
수 입 수 수 료	162,137,836	
II. 매출원가		1,287,720,610
도 급 공 사 매 출 원 가		406,452,002
상 품 매 출 원 가		696,377,980
기 초 상 품 재 고 액	0	
당 기 상 품 매 입 액	821,326,520	
기 말 상 품 재 고 액	124,948,540	
제 품 매 출 원 가		184,890,628
기 초 제 품 재 고 액	0	
당 기 제 품 제 조 원 가	184,890,628	
기 말 제 품 재 고 액	0	
III. 매출총이익		573,928,837
IV. 판매비와관리비		464,361,888
임 원 금 여	32,640,000	
직 원 금 여	173,990,000	
상 여 금	22,465,000	
장	9,219,240	
퇴 직 금 여	16,438,860	
복 리 후 생 비	35,217,404	
여 비 고 통 비	9,662,760	
집 대 비	952,100	
통 신 비	4,605,170	
수 도 광 열 비	5,242,602	
세 금 과 공 과 금	2,537,680	
감 가 상 각 비	27,143,591	
지 금 임 차 료	8,200,000	
수 선 비	5,000	
보 험 료	9,100,283	
차 량 유 지 비	17,973,439	
운 반 비	11,569,308	
교 육 훈 련 비	2,482,727	
도 서 인 쇄 비	6,873,168	
소 모 품 비	10,290,152	
지 금 수 수 료	53,305,404	
광 고 선 전 비	1,000,000	
판 매 촉 진 비	2,100,000	

손익계산서

제 1(당)기 2012년 9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지앤즈

(단위 : 원)

과 목	제 1 (당)기	
	금 액	
감 비	1,348,000	
V. 영 업 이 익		109,566,949
VI. 영 업 외 수 익		2,660,651
이 자 수 익	214,542	
장 려 금 익	2,353,500	
잡 이 익	92,609	
VII. 영 영 외 비 용		38,923,681
이 자 비 용	30,328,225	
외 환 차 손	630,152	
기 부 금	7,000,000	
단 기 투 자 자 산 처분 손	315,249	
재 해 손 실	650,000	
장 손 실	55	
VIII. 법 인 세 차 감 전 이 익		73,303,919
IX. 법 인 세 등		2,010
법 인 세 등	2,010	
X. 당 기 순 이 익		73,301,909

제 조 원 가 명 세 서

제 1기 2022년 06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지앤즈

(단위 : 원)

과 목	제 1 (당)기	
	금 액	
I. 원 재 료 비		122,259,614
당 기 원 재 료매입액	189,530,908	
기 말 원 재 료재고액	67,271,294	
II. 노 무 비		17,210,000
임 금	15,480,000	
상 여 금	1,730,000	
III. 경 비		38,328,598
감 가 상 각 비	23,586,398	
포 장 비	11,647,363	
소 모 품 비	3,094,837	
IV. 당 기 총 제 조 비 용		177,798,212
V. 기 초 재 공 품재고액		0
VI. 타 계 정 으 로 대 체 액		15,682,732
VII. 합 계		193,480,944
VIII. 기 말 재 공 품재고액		8,590,316
IX. 타 계 정 으 로 대 체 액		0
X. 당 기 제 품 제 조 원 가		184,890,628

공 사 원 가 명 세 서

제 1기 2012년 09월 0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
자

회사명 : (주)지앤즈

(단위 : 원)

과 목	제 1 (당)기	
	금 액	
I. 공 사 원 재 료 비		0
II. 노 무 비		0
III. 외 주 비		403,091,362
외 주 비	403,091,362	
IV. 경 비		3,360,640
소 모 품 비	3,360,640	
V. 당 기 총 공 사 비 용		406,452,002
VI. 공 사 손 실 충 당 전 입		0
VII. 공 사 손 실 충 당 환 입		0
VIII. 기 초 미 완 성 공 사 역		0
IX. 타 계 정 에 서 대 체 역		0
X. 합 계		406,452,002
X I. 기 말 미 완 성 공 사 역		0
X II. 타 계 정 으 로 대 체 역		0
X III. 당 기 공 사 원 가		406,452,00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1(당)기 2012년 09월 01일 부터
2012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13년 03월 01일

회사명 : (주)지앤즈

(단위 : 원)

과 목	제 1(당)기	
	금 액	
I.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73,301,909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0	
2. 회 계 변 경 의 누 적 출 과	0	
3. 전 기 오 류 수 정 이 익	0	
4. 전 기 오 류 수 정 손 실	0	
5. 중 간 배 당 금	0	
6. 당 기 순 이 익	73,301,909	
II. 잉 의 적 립 금 등 의 이 입 액		0
1.	0	
2.	0	
합 계		73,301,909
III. 이 익 잉 여 금 처 분 액		0
1. 이 익 준 비 금	0	
2. 기 업 합 리 화 적 립 금	0	
3. 배 당 금	0	
가. 현 금 배 당	0	
나. 주 식 배 당	0	
4. 사 업 확 장 적 립 금	0	
5. 강 재 적 립 금	0	
6. 배 당 평 균 적 립 금	0	
IV. 차 기 이 월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73,301,909

합계잔액시산표

201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지앤즈

(단위 : 원)

차		변		계	정	과	액	대		변	
잔	액	합	계					합	계	잔	액
910,253,426		7,843,284,115				유	동	6,933,030,689			
709,443,276		6,047,603,113				<상	화	5,338,159,837			
65,764,988		3,132,635,496				현	금	3,066,870,508			
4,000,000		64,000,000				단	기	60,000,000			
		8,715,000				단	기	8,715,000			
549,598,615		2,480,080,967				매	출	1,930,482,352			
179,098		179,098				미	수				
50,247,000		83,315,288				선	금	33,068,288			
6,411,085		8,428,733				선	금	2,017,648			
33,000,000		161,000,000				가	지	128,000,000			
		106,574,311				부	가	106,574,311			
242,490		2,674,220				미	환	2,431,730			
200,810,150		1,795,681,002				<예	고	1,594,870,852			
124,948,540		821,326,520				상	품	696,377,980			
		184,890,628				제	품	184,890,628			
67,271,294		189,530,908				원	재	122,259,614			
8,590,316		193,480,944				재	공	184,890,628			
		406,452,002				미	관	406,452,002			
1,598,412,589		1,603,412,589				비	유	55,729,989		50,729,989	
4,351,300		4,351,300				<특	자				
4,351,300		4,351,300				보	험				
1,510,061,289		1,510,061,289				<유	형	50,729,989		50,729,989	
745,786,670		745,786,670				토	지				
419,053,710		419,053,710				건	물				
						감	가	3,492,114		3,492,114	
156,894,000		156,894,000				기	계				
						감	가	23,586,398		23,586,398	
71,319,140		71,319,140				차	량				
						감	가	10,721,643		10,721,643	
33,507,769		33,507,769				비	품				
						감	가	5,037,334		5,037,334	
13,500,000		13,500,000				건	설				
70,000,000		70,000,000				시	설				
						감	가	7,892,500		7,892,500	
2,800,000		2,800,000				<무	형				
2,800,000		2,800,000				소	프				
81,200,000		86,200,000				<기	타	5,000,000			

합계잔액시산표

201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지연즈

(단위 : 원)

차		계	내역	대	
잔	액			합	계
81,000,000		86,000,000	임 차 보 증 금	5,000,000	
200,000		200,000	기 타 보 증 금		
		2,921,813,913	유 동 부 채	3,944,848,030	1,023,034,117
		1,262,329,119	매 입 채 무	1,441,374,360	179,045,241
		4,375,412	미 지 금 림	14,753,158	10,377,746
		23,577,700	예 수 림	30,291,860	6,714,160
		137,320,210	부 가 세 예 수 림	208,740,460	71,420,250
		34,000,000	가 수 림	34,000,000	
		332,037,462	선 수 금	402,468,462	70,431,000
		980,000,000	단 기 차 입 금	1,610,000,000	630,000,000
		148,174,010	미 지 금 비 용	203,219,730	55,045,720
		353,980,250	비 유 동 부 채	1,253,980,250	900,000,000
		350,000,000	장 기 차 입 금	1,250,000,000	900,000,000
		3,980,250	퇴 직 금여송당부채	3,980,250	
			자 본 금	461,600,000	461,600,000
			자 본 금	461,600,000	461,600,000
		73,301,909	이 익 잉 여 금	146,603,818	73,301,909
			이 월 이 익 잉 여 금	73,301,909	73,301,909
		73,301,909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73,301,909	
		1,864,310,098	손 익	1,864,310,098	
		1,864,310,098	손 익	1,864,310,098	
		1,861,649,447	매 출 총	1,861,649,447	
		733,843,509	상 품 매 출	733,843,509	
		351,139,832	재 품 매 출	351,139,832	
		614,528,270	공 사 수 입 금	614,528,270	
		162,137,836	수 입 수 수 료	162,137,836	
		1,287,720,610	매 출 원 가	1,287,720,610	
		696,377,980	상 품 매 출 원 가	696,377,980	
		184,890,628	재 품 매 출 원 가	184,890,628	
		406,452,002	도 급 공사매출원가	406,452,002	
		177,798,212	배 조 원 가	177,798,212	
		122,259,614	<매 료 비>	122,259,614	
		122,259,614	원 재 료 비	122,259,614	
		17,210,000	<노 무 비>	17,210,000	
		15,480,000	임 금	15,480,000	
		1,730,000	상 여 금	1,730,000	
		38,328,598	<배 조 경 비>	38,328,598	

합계잔액시산표

201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지앤즈

(단위 : 원)

차		계	대	
잔	액		합	잔
	23,586,398		23,586,398	
	11,647,363		11,647,363	
	3,094,837		3,094,837	
	406,452,002		406,452,002	
	406,452,002		406,452,002	
	403,091,362		403,091,362	
	3,360,640		3,360,640	
	464,361,888		464,361,888	
	32,640,000		32,640,000	
	173,990,000		173,990,000	
	22,465,000		22,465,000	
	9,219,240		9,219,240	
	16,438,860		16,438,860	
	35,217,404		35,217,404	
	9,662,760		9,662,760	
	952,100		952,100	
	4,605,170		4,605,170	
	5,242,602		5,242,602	
	2,537,680		2,537,680	
	27,143,591		27,143,591	
	8,200,000		8,200,000	
	5,000		5,000	
	9,100,283		9,100,283	
	17,973,439		17,973,439	
	11,569,308		11,569,308	
	2,482,727		2,482,727	
	6,873,168		6,873,168	
	10,290,152		10,290,152	
	53,305,404		53,305,404	
	1,000,000		1,000,000	
	2,100,000		2,100,000	
	1,348,000		1,348,000	
	2,660,651		2,660,651	
	214,542		214,542	
	2,353,500		2,353,500	
	92,609		92,609	
	38,923,681		38,923,681	

합계잔액시산표

201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지앤즈

(단위 : 원)

차		내 역	대	
잔	변		잔	변
액	액	액	액	액
	30,328,225	이 자 비 용	30,328,225	
	630,152	외 환 차 손	630,152	
	7,000,000	기 부 금	7,000,000	
	315,249	단기투자자산처분손	315,249	
	650,000	재 해 손 실	650,000	
	55	감 손 실	55	
	2,010	법 인 세 등	2,010	
	2,010	법 인 세 등	2,010	
2,508,666,015	18,899,671,375	합 계	18,899,671,375	2,508,666,015